2026-중소기업지원실-734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위험 부정수급 사이렌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추가물품, 공사 등 무상수령"을 통한 부정수급 주의

[CASE] 부정사례

사업장이 **제작·판매업체**로부터 **보조·지원 설비 외 물품**이나 **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자부담을 경감**받는 **부정수급** 위험 감지 (통상적으로 페이백은 가격부풀리기가 선행)

→ **추가 물품, 공사 등 무상수령** 행위도 **"페이백"으로 간주될 수 있음**

[SCHEME] 부정수법

1. 판매업체가 "보조·지원 품목을 구매하면 추가 물품이나 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영업
2. 사업장이 보조·지원 설비 이외의 추가 물품이나 공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 받음
3. 결과적으로 판매업체가 사업장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자부담금을 되돌려주는 것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거짓·부정)에 해당**

[RISK] 행정처분

- **(환수)** 페이백 형태의 무상 물품, 공사 수령 등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및 이자 환수
- **(추가환수)** 지급된 보조금의 최대 5배
- **(참여제한)** 향후 5년간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형사고발)** 보조금 편취를 위한 고의성 및 기망 행위 시 형법 제347조(사기)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부정수급 신고방법>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s://portal.kosha.or.kr/)

고객센터 > 민원질의하기 > 부정행위신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